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제768호 2020. 9. 16.(수)



선	기관의 장
결	

## 고 시

제2020-103호 거창군관리계획(체육시설 골프장)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2

제2020-104호 도로명주소 고시 ..... 5

## 공 고

제2020-1183호 보 상 계 획 공 고 ..... 7

제2020-1195호 「거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1

제2020-1199호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8

제2020-1208호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21

제2020-1213호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공고 ..... 24

제2020-1220호 2020년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사업(2차) 공고 ..... 36

회 램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0-103호

거창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창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골프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하고,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거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년 09월 17일

거창군수

1. 거창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경미한 사항)

가. 체육시설(변경)

1) 골프장(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체육시설	골프장	신원면 덕산리 산13번지 일원	1,802,767	증)11,249	1,814,016	경상남도 고시 제2007-92호 (2007.03.29)	

■ 골프장 변경사유서

도면표기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적변경 - 1,802,767m<sup>2</sup>→1,814,016m<sup>2</sup> [증) 11,249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대상지 내(산 13번지) 주민들의 임의 사용 지역 체척 및 지적측량 오차 반영</li> </ul>

2. 거창군계획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 명 칭 : 거창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일명:감악산골프장)

다. 사업규모(변경)

- 당 초 : 1,802,767㎡
- 변 경 : 1,814,016㎡ (증 11,249㎡)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합 계	1,802,767	증) 11,249	1,814,016	100.0	100.0	
	체육시설 용지	337,718	감) 3,651	334,067	18.7	18.4	
	건축시설 용지	9,165		9,165	0.5	0.5	
	공공시설 용지	89,749	증) 4,180	93,929	5.0	5.2	
	녹지 용지	1,366,135	증) 10,720	1,376,855	75.8	75.9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 성 명
  - 당 초 : 코리아신타(주) 대표이사 최익중
  - 변 경 : 코리아신타(주) 대표이사 백인균

마. 사업기간(변경)

- 당 초 : 2008. 03. 13. ~ 2020. 09. 30.
- 변 경 : 2008. 03. 13. ~ 2020.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3. 관계도서 : 실음생략[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비치]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1,819,732	1,814,016	1,802,767	1,814,016					
1	신원면 덕산리	231	답	255	255	255	25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2	신원면 덕산리	255	임	205	205	205	20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3	신원면 덕산리	256	임	89	89	89	8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4	신원면 덕산리	257	임	89	89	89	8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5	신원면 덕산리	374	답	2,172	2,172	2,172	2,17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6	신원면 덕산리	377	임	89	89	89	8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7	신원면 덕산리	378	답	873	873	873	87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8	신원면 덕산리	379	답	231	231	231	23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9	신원면 덕산리	380	답	423	423	423	4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10	신원면 덕산리	391	답	833	833	833	8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11	신원면 덕산리	440	임	1,236	1,236	1,236	1,23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12	신원면 덕산리	산13	임	1,811,055	1,805,339	1,794,090	1,805,33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13	신원면 덕산리	산59	임	2,182	2,182	2,182	2,18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9. 16.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51-17 등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 별 도 열 람 )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밤티재로 1288-1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밤티재로 1288-52	20091228	20200916	밤티재라는 지명이 반영된 도로	변경 (직권)
2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229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개금길 258	20090401	20200916	금이 많이 나왔다하여 개금이라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 반영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8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깊은골길 24-81	20090401	20200916	양지에서 동쪽 2km 떨어진 깊은 골짜기에 있다하여 붙여진 옛지명 반영 도로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026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부산2길 25	20090401	20200916	옛날 무학대사가 지형이 가마솥설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810-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빙기실길 40	20090401	20200916	빙기실이라는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	부여
6	경상남도 거창군 옹양면 군암리 1090	경상남도 거창군 옹양면 송산길 234-11	20090401	20200916	마을 앞에 소나무 정자가 있어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부여
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51-1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2길 82-11	20090401	20200916	아림로의 시작점에서부터 두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부여 (직권)

# 보 상 계 획 공 고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일원에 계획된 “거창버스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추가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보상협의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 10.

## 거 창 군 수

###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거창버스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일원
- 다. 사 업 량 : 추가 조성부지 A=205㎡
-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 2. 토지출입내용

- 가. 출입사유 : 토지 및 물건 조사, 측량, 감정평가 등
- 나. 출입토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999-2 등 4필지
- 다. 출입기간 : 2020. 9. 10. ~ 사업 종료 시까지

###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999-2 등 4필지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와 지상물건 확인 및 누락 여부 등
  -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거창군청 경제교통과(교통담당) 및 거창군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 ⇒ 입법/공고/고시)에서 확인 가능함.

####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 9. 10.(목) ~ 2020. 9. 25.(금)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담당

【☎055-940-3382, fax)055-940-3349】

다. 이의신청 및 방법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열람기간 내 서면 또는 팩스전송, 우편으로 제출

5.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예정

####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나.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 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통지 예정임.

#### 7.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 및 경상남도지사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나.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 8.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음.

나.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함.

다. 본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가 되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이 의 신 청 서

① 사 업 명	거창버스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② 사업장 위치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일원		
③ 사 업 자	거 창 군 수		
④ 이 의 신 청 제 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⑤ 이 의 신 청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토지 및 물건 조서를 열람하고 조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 년 9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 출 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거 창 군 수 귀하</p>			

## 토 지 편 입 조 서

◎ 사업명: 거창버스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순번	소재지 (거창군)	지 번	지목	지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대장상	편입면적	성 명	주소	지분	성 명	주소	권리내용	
1	거창읍 대평리	999-2	도	122	122	신*목	-	1/1	해당없음			
2	거창읍 대평리	998-4	도	7	7	신*무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40	1/1	해당없음			
3	거창읍 대평리	1000-3	도	73	73	김*석	-	1/1	해당없음			
4	거창읍 대평리	1001-5	대	3	3	김*범	-	1/1	해당없음			
	<b>합 계</b>			<b>205</b>	<b>205</b>							

## 「거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거창군수

###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 2. 제정이유

거창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거창군을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3. 주요내용

- 가. 문화도시 조례 제정 목적·기본이념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3조)
- 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의 근거마련(안 제5조)
- 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 사항(안 제6조)
- 라.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3조)
- 마.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4. 예고기간 : 2020. 9. 11.(금) ~ 10. 5.(월)

####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문화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문화관광과)

다. 전화 055-940-3412, 팩스 055-940-3409, 이메일 gomsiggi@korea.kr

라.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055)940-34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끝.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20-
----------	-------

제출일자	2020. 9. .
제 출 자	문화관광과장

### 1. 제안이유

- 문화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 고유의 문화생태계 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
- 문체부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마중물 및 예비사업 추진 시 활동지원 근거 등 구체적 실행기반 마련

### 2. 주요내용

- 가. 문화도시 조례 제정 목적·기본이념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3조)
- 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의 근거마련(안 제5조)
- 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 사항(안 제6조)
- 라.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3조)
- 마.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 나. 예산조치 :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9. 11.~10. 5.
    - 나) 예고결과 :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 4) 성별영향분석 :

**거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거창군을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문화를 통해 거창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고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기 위해 공동체의 건강한 회복, 문화를 통한 신산업 동력 확보, 지역 내 다양성 존중과 격차 해소, 생태가 보전되는 지역발전의 가치를 시책 전반에 확산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이 문화 창조와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일반 군민과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도시 종합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과 연계 또는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
2.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

하여 거창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계획의 추진·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도시재생·도시경관 등을 말한다)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 제안사업 검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 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4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센터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문화도시 지정 수행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운영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군수는 문화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포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포상조례」

2. 개정이유

- 포상대상자 심의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심사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포상업무를 추진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포상절차 개정(안 제9조 2항) :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여
- 나. 공적심사위원회 조항 신설(안 제9조의 2)
  -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7명 이내
    - 위원장 부군수, 부위원장 행정과장, 위원은 국·과·소장 중 군수가 임명
  - 2) 심사절차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

4. 입법예고기간 : 2020. 9. 14. ~ 2020. 10. 4.(20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 10. 4.(일)

나. 제출방법 : 방문(평일 근무시간 내),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기관 : 거창군 행정과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 전화 : 055)940-3176, FAX: 055)940-3169
- 이메일 : ipju0906@korea.kr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 조 례 명 : 거창군 포상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9조(포상절차)</b>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는 <u>군의 실과장</u>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별표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여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p> <p>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u>인사위원회의</u>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p>	<p><b>제9조(포상절차)</b>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는 <u>군의 국·과장</u>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별표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여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p> <p>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u>공적심사위원회</u>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b>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b>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행정과장, 위원은 국·과·소장 중 군수가 임명한다.</p> <p>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주사로 한다.</p> <p>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p>

##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교통사고 예방 방지를 위하여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운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5일

## 거 창 군 수

### 1. 행정예고 내용

- 설치목적 : 차량 운행속도 저감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
- 사업명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 설치규모 :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1대(과속 1)
- 설치위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085 노혜마을 입구(거창읍→가조면)
- 주관부서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담당 ☎055-940-3382)

###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 3. 공고방법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년 9월 15일 ~ 2020년 10월 6일(21일간)

#### 5. 의견제출

-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E-mail 등
- 제출기관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교통담당)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 전 화 : 055-940-3382
  - FAX : 055-940-3349
  - E-mail : eros338@korea.kr

#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장소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마을주민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장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거창읍 노혜마을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장소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공고

매연발생량이 많은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15.

거창군수

### ①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0. 9. 18.(금) ~ 2020. 10. 7.(수)
- 사업물량 : 170여대
- 접수처 : 읍면, 군청 환경과(4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2020. 10. 7.도착분까지 유효함)
- 사업내용 : 조기폐차 및 신차 구입 지원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대상자 선정) 통보 : 2020. 10. 28.

### ②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12.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② (등록기간) 조기폐차 신청마감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거창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③ (소유기간) 조기폐차 신청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 ④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⑤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 차량  
※ 대상자 선정(확인서 교부) 후 성능검사 실시



- ⑥ (기 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신청제외 대상 : 사고 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

### ③ 선정순위

- 1순위 :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 2순위 : 차량연식이 오래된 순 (제작일자 기준)

### ④ 지원금액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총중량 3.5톤 미만) 폐차시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후, 등록된 신차에 대해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경유차, 중고차, 이륜차 제외)
  - (총중량 3.5톤 이상) 폐차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후, 휘발유·가스 대체차량 없는 대형 차량이 Euro6 이상 차량\*을 신차로 등록한 경우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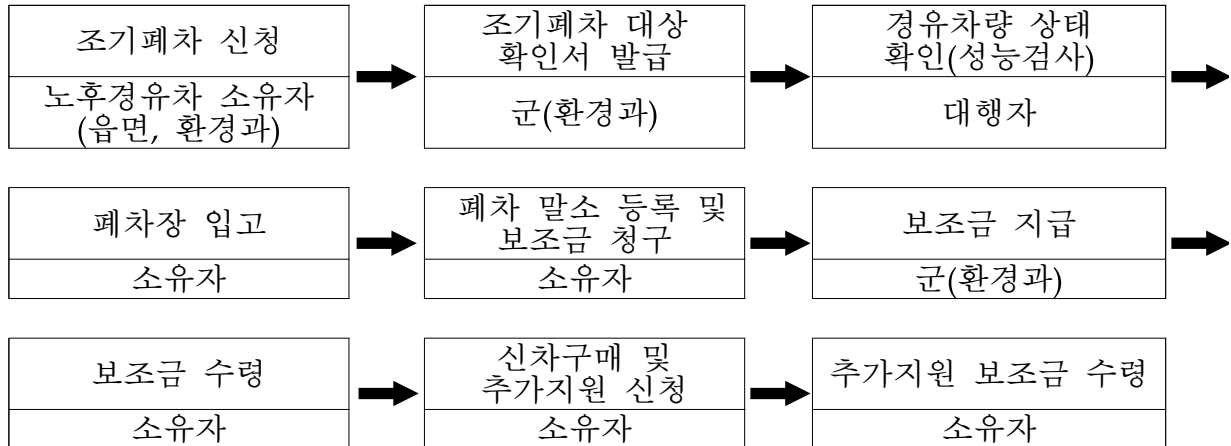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의 경우에는 차량기준 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 지원(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5] 보조금액 산정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 차량기준가액표에 '06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5년 차량가액은 '06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2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2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 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보조금 지급 금액 산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일괄 추진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6 지원절차



## 7 조기폐차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신청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 ◆ 본인 휴대폰 055-114로 전화 확인 가능
-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및 전화로 확인
  -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 (☎1833-7435)

### 1) 신청서 접수 ※ 선착순 선정이 아니며 접수기간 중 일괄접수 후 대상자 선정

####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

- 방문 접수 : 읍면, 환경과(군청 4층)
- 우편 접수
  - 보내는 곳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거창군청 환경과
  - 우편접수 시에는 차량 소유자 본인명의 등기우편이 접수기간 내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 ○ 제출서류

#####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붙임 1)

※ 신청서의 신청자란에는 차량 소유자 이름을 기재

##### ②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공동명의로의 경우 명의자 모두 신분증이 필요하며,

소유자 본인이 아닌 대리신청할 경우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필요  
사업자(법인)인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필요

- ③ 자동차등록증 (건설기계인 경우 건설기계등록증)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2)
- ⑤ (법인)인감증명서(법인 또는 위임시)
- ⑥ 위임장(법인 또는 위임시)
- ⑦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됨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사업자(법인)일 경우)

## 2)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지급대상자 선정] 통보

- 통보일자 : 2020. 10. 28.
- 통보방법 : 개인별 우편 발송
- 통보내용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송

## 3) 정상가동 판정(성능검사 실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보받은 소유자는 지원대상 확인서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만 보조금 지급 청구 가능함

### \* 성능검사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교부)일로부터 자동차 폐차 전까지 발행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
- 성능검사 비용은 차량소유자 부담이며, 성능검사를 받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관내 성능검사 업체>**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주)남한정비	거창읍 밤티재로 1262	943-7700

- ※ 타 지역 성능검사도 인정
- 관내 성능검사 수수료 : 30,000원 정도(본인 부담)
  -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정상운행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차량성능검사 결과서로 대체 가능

**4) 대상차량 폐차·말소등록**

- 정상가동 판정받은 차량의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교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 및 보조금 지급 청구하여야 함.
- 차령초과 말소는 보조금 지급 제외

**5)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 청구기한 :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보조금 청구
- 청구서류
  -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붙임 3)
  - ② 자동차 소유자 통장 사본
  - ③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정상가동 판정, 성능검사서류)
  - ④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건설기계인 경우 건설기계 말소등록증 사본)
  - 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거창군 발행분)
  - ⑥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위임시)
  - ⑦ 위임장(법인인 경우 또는 위임시)

**【유의사항】**

- 2개월이내 미 청구시 보조금 지급 제외됨.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시 보조금 지급 안됨
- 우편접수 시에는 차량 소유자 본인명의 등기우편이 보조금 청구기한 내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출

## 6) 차량(신차)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

○ 대 상 자 : 조기폐차 후 신차구매시 추가 지원

(신차 구매 등록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후 신차를 등록한 차량에 한하며, 조기폐차를 완료 후 차량구매보조금 청구 가능함)

○ 청구기한 :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청구서류

①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붙임 4)

② 자동차 소유자 통장 사본

③ 신차 구매 자동차등록증(건설기계(도로용3종)인 경우 건설기계 등록증)

### 【유의사항】

- 4개월이내 미 청구시 보조금 지급 제외됨.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시 보조금 지급 안됨

- 우편접수 시에는 차량 소유자 본인명의 등기우편이 보조금 청구기한 내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 7)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 ‘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 및 거창군 유권해석에 의하며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이전 폐차나 신차구입 등록된 차량의 경우 보조금 지급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립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중도포기자 발생시 차순위자 추가 확정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환경과(☎ 940-349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4.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5. 위임장

[붙임 1]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차량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필수 입력
자동차번호		
조기폐차 후 신차(경유차량 외) 구매여부		※ 여 또는 부에 체크(기재 안되면 신차 구입 보조금 지급 불가) <input type="checkbox"/> 구입(여) <input type="checkbox"/> 미구입(부)
저소득층 해당 여부(체크)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p>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말소등록일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p>		
신청자 :		2020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자동차 소유자의 <b>주민등록증</b> 이나 <b>운전면허증 사본</b> (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b>자동차등록증(건설기계등록증) 사본</b>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원부 1부
		수수료   없 음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 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

(서명, 날인)

거창군수 귀하





확인번호	<b>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b>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규 구매 차량 정보	자동차번호	
	연 식	
	등록일자	2020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 신청금액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하단의 지원가액 확인 원 (₩                      )
<p style="text-align: center;">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                      (서명 또는 인)</p> <p>거창군수 귀하</p>		
<p><b>※ 첨부서류(필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b>통장 사본</b> 1부</li> <li>2. <b>신차 자동차등록증</b>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 <b>사본</b> 1부</li> </ol> <p>* 공동명의 차량은 1인을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의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제출</p>		

[붙임 5]

##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주 소	
	성 명	(인)인감도장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 \_\_\_\_\_ 는(은) 수임자 \_\_\_\_\_ 에게  
 차량번호 \_\_\_\_\_ 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차량구매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0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시 서명

- 1) 차량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조금을 청구하고 서류제출만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작성 불필요
- 2) 공동소유 차량은 대표자를 지정하여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고 위임장을 작성 제출
- 3) 조기폐차 대상차량이 공동소유 차량이고 조기폐차 및 차량구매 보조금 둘다 지원할 시 조기폐차시 제출한 위임장으로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완료시까지 활용

거창군수 귀하

# 2020년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사업(2차) 공고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16.

거창군수

## 1.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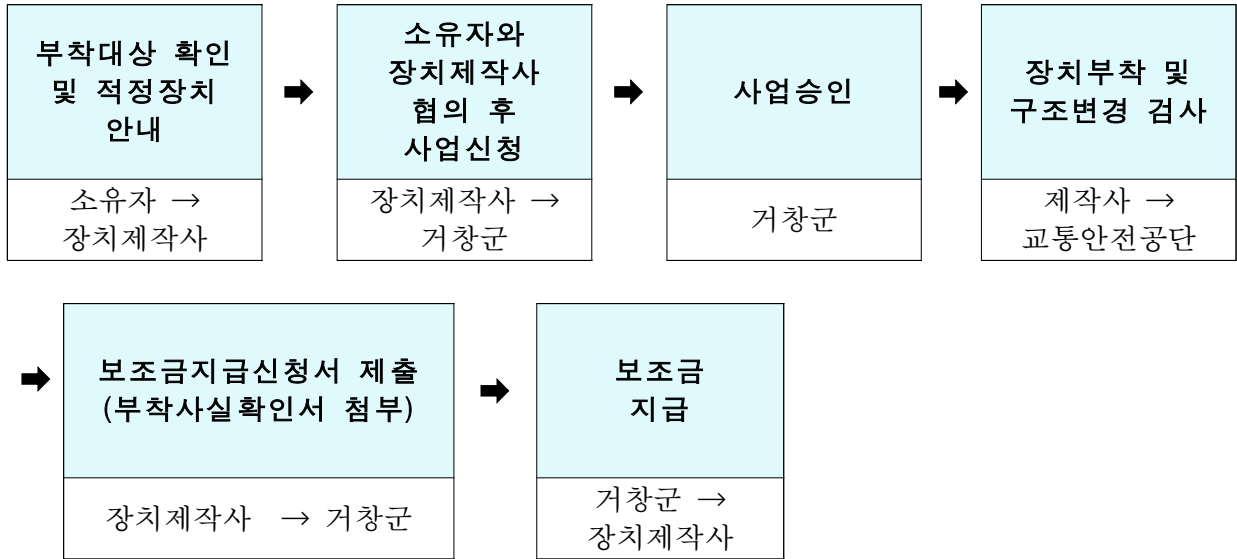
- 신청기간 : 2020. 9. 16.(목) ~ 10. 8.(목)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사용본거지가 거창군으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사업물량 : 45대 정도 [157백만원]

(접수 차종형식에 따라 지원물량 변동될 수 있음)

## 2.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신청자는 (붙임1) 장치제작사 업체현황을 참고하여 제작사와 사전에 부착 가능여부를 협의 후 **장치제작사를 통해 사업신청**
  - 부착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장치제작사가 거창군으로 사업 승인 신청
    - ➔ 사업신청시 신청서(붙임2) 및 차주와 장치제작사의 계약서(붙임3 서식) 원본 제출
    - ➔ 장치 부착 신청과 보조금의 청구·수령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 (붙임6 서식)

○ 지원절차



### 3. 대상자 선정기준

(①→⑤ 순위로 함)

- ① 생계형 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② 타지자체로부터 운행제한 과태료 처분 또는 계고장을 받은 차량  
(단, 증거자료 제출 시)
- ③ 영업용 차량
- ④ 최근에 제작된 차량(제작일자 기준)
- ⑤ 배기량이 높은 순

### 4. 지원조건

○ 부착가능여부 확인을 한 장치제작사가 거창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건에 한하여 장치 부착(교체) 후 보조금을 지원함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자는 장치제작사와 사전 부착가능 여부를 협의한 후 저감장치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
- 장치제작사가 거창군에 승인 신청 시 신청자의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및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을 것**
-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이 완료된 저감장치를 부착할 것
-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노후차량 및 의무사용 이행기간 충족이 불가능한 차량은 부착 제한 (장치제작사 확인)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최소 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이내에 수출·폐차로 인해 등록 말소시 보조금 지원금액 기간별 회수 조치

**[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별표8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 의무 부착기간이 경과한 차량도 저감장치를 제거할 수 없음
- 장치는 임의 탈거 불가하며, 의무운행기간 후 차량 말소 시 거창군에 반납해야 함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장치반납 대행]**
- 보조금은 신청인이 계약을 체결한 장치제작사에게 거창군이 직접 지급하며, 취득세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 자부담해야 함

## 5.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5,988	5,391	597	10.0%	462	
	자연중형	5,409	4,869	540	10.0%	462	
	복합대형	10,327	9,295	1,032	10.0%	462	
	복합중형	7,791	7,013	778	10.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3,727	3,262	465	12.5%	462
		화물	3,727	3,355	372	10.0%	462

-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무상점검 비용 3.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 2)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3)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 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발급)제출

## 6.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청구기한 :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 청구방법

- 장치 부착 완료 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에 등록이행 후 보조금 청구
- 청구서류 접수한 날로 30일 이내, 장치제작사에게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한 보조금을 지급

※ 제출한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함

### 구비서류

- ①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② 장치부착 가능 여부에 대한 장치 제작사의 확인서 1부
- ③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계약서 1부
- ④ 제작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⑤ 제작사 (법인)인감증명서 1부
- ⑥ 차량소유자 신분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차량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⑦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⑧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 ⑨ 위임장 1부
-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제작자, 소유자)
- ⑪ 보조금 청럼 이행서약서 각 1부 (제작자, 소유자)

## 7.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거창군 유권해석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환경과 환경정책담당(☎055-940-3493)으로 문의

- 붙임
1.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 현황 1부.
  2. 배출가스 저감(DPF부착)사업 참여 신청서 1부.
  3.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계약서 1부.
  4.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1부.
  5.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6. 위임장 서식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8. 보조금 청립 이행서약서 1부. 끝.



[붙임 1]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부착) 제작사 현황

No	제작사	연락처	비 고
1	(주)이엔드디	1644-2402 02-2029-7034~5	
2	(주)에코닉스	1666-3243(2번)	
3	(주)세라컴	02-744-1777	
4	HK-MnS(주)	070-4267-2727~36	
5	(주)크린어스	1577-9014	
6	일진복합소재(주)	1588-7558 063-263-1700	
7	화이버텍(주)	031-942-9008	
8	씨엠씨	031-358-6752	
9	엠즈홀딩스	02-3667-5191	
10	후지노테크(주)	031-654-2031	

##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DPF부착)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자	상 호 (제작사)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		
	연락처	담당자 :                                   (FAX :                                   )		

신청내용	일련 번호	차량현황						장치현황		차 량 소유자	사 용 본거지	장 치 장착점
		등 록 번호	차 명	원동기 형 식	총중량 (kg)	배기량 (cc)	출력 (PS)	최 초 등록일	장치종류 (인증번호)			

2020년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DPF부착)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참여 신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거창군수 귀하**

**※ 첨부 서류**

1. 장치부착 가능 여부에 대한 장치 제작사의 확인서 1부.
2. 매연 저감장치 부착 계약서 1부.
2. 제작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소유자 신분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차량 :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5. 위임장 1부.
6. 보조금 청립 이행서약서 각 1부(제작사, 소유자).
7. 배출가스 인증서 사본 1부.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계약서

2020년 거창군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2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차량 소유자 유의사항을 직접 작성하고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상차량 현황

차량 번호		소유자		저소득 해당 여부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차량 총중량	kg	연식		원동기 형식	
저속운행 여부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원동기 형식		보조금	만원
장치 제작사		장치 종류			

차량소유자 유의사항 - 내용 숙지 후 ( )안은 자필로 작성

- 지원받는 상기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합니다.
- 장치부착 후 의무사용기간은 (2년), 엔진교체 후 의무사용기간은 (3년)이며, 의무사용기간 내 반납 시 (장치) 및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을 무단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차량 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보조금 전액 회수 및 행정조치가 따를 수 있음
- 수출·폐차 등 차량 말소 시에는 (장치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 부착 및 개조와 관련한 보증(A/S)기간은 구조변경일로부터 ( 3년 )까지이며, 장치 제작사 및 정비업체에서 서비스 가능합니다.
- 부착(교체)은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만 가능하며, 초과 시 자동 취소됩니다.

부착 및 개조 시 혜택

- 저감장치 부착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합격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 계약서 원본은 거창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본은 장치 제작사, 차량 소유자가 1부씩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장치 제작사〉	〈차량 소유자〉
업체명 :	차량번호 :
소재지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연 락 처 :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다음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장착차량 현황**

차량소유자			차 명			1)차량용도		
차량번호			연 식 (최초등록일)			원동기 (엔진)형식		
배 기 량	cc		출 력	ps		주행거리	km	
2)부착 전 매연농도	KD-147	%	엔진 오일소모량	ℓ / 1,000km		특이사항 (차량정비사항)		
	lug-down	%						
	무부하급가속	%						

**장치 현황**

3)장치구분 (인증번호)	( )	4)장치종류		제품(일련 번호)	
제 작 사		장착장		장 착 일 (구조변경일)	년 월 일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금전반납 포함) 의무가 있음  
- 구조변경검사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장치 및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2년(의무사용기간) 경과 : 장치만 반납
-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차량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제1종(DPF) 및 제2종(pDPF) 장치 부착 차량은 구조변경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저감장치 성능확인검사서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됨
-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LPG)엔진 개조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의 비교란에 따라 5퍼센트 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됨

**인수 서류 목록**

- 자동차등록증 원본(구조변경 내역 확인 필)
- 장치 보증서(차량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차량소유자(또는 차량운행사)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장치설명서 및 차량운전요령 설명자료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사본

2020 년      월      일

작성자(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사) :                                  (인), 연락처(                                  )  
 확인자(장착장)    :                                  (인), 연락처(                                  )

○○○○회사 대표자 귀하

※ 작성 시 유의사항

1 <sup>1)</sup>란의 차량용도는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고속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청소차량, 학교차량, 학원차량, 회사차량, 특수차량(집게차, 살수차, 기내식 운반차, 굴선작업차, 사다리차, 크레인차, 사료운반 PTO사후 특장 덤프, 전경·병원·혈액원 버스, 방송국차량, 소방차,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분노차량)
- 위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단거리 운행차량(시내주행만 하는 차량), 장거리 운행차량(지방운행이 많은 차량)

2 <sup>2)</sup>란의 부착 전 매연농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의 종합검사 기록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지방전입 등 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 장착사업장에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기재

3 <sup>3)</sup>란의 장치구분(인증번호)는 제1종(DPF), 제2종(p-DPF), 저공해(LPG)엔진개조, PM·NOx동시저감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인증번호는 장치의 인증서를 참고하여 기재

4 <sup>4)</sup>란의 장치종류 기재는 제1종(DPF)의 경우 복합중형, 복합대형, 복합소형, 자연중형, 자연대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제2종(p-DPF)의 경우 중형, 소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PM·NOx동시저감은 일체형, 분리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 보조금 지급청구서

신청자	사업자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							
지급 신청 내용	장치종류	합계	<b>차량 DPF</b>			건설기계 DPF		건설기계 엔진교체		
	장치구분		자연대형, 자연중형, 복합소형, 복합중형 (RV, 승합, 화물 구분)			대형, 중형		지게차(2톤급, 4톤급, 6톤급) 굴삭기(5톤급, 14톤급)		
	사업량									
	사업비									
장치 부착 개조 교체 결과	일련 번호	소유자 성명	차량현황					장치현황		부착 일자
			등록 번호	차종	원동 기 형식	차량 총중 량	배기량	장치 종류	장치 형식 (제작사)	
	합계									

2020년 거창군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거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1부(서식 1)
2. 당해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4.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사본 1부
5.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서식 2)
6. 유지관리비용 청구서(협회작성) 1부
7.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3)
8.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생계형 차량 적용대상에 한함) 1부

<b>위 임 장</b>	
차 량 의 표 시	차량등록번호 :  차 명 :  저감장치종류 :
위임의 내용	거창군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DPF부착) 사업 보조금등 신청·청구·수령권 위임
위 임 인 <span style="margin-left: 150px;">대 리 인</span>	
차량소유자 :                    ①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대리인 : (장치제작사)  ①  주소 : 장치제작사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차량 에 대한 거창군 보조금 등의 신청,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2020 년      월      일
차량운행자 :                    ①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차량 소유자와의 관계	
붙임 1. 인감(법인)증명서 1부. 2. 차량소유(운행)자 신분증 사본 1부. (성명은 반드시 정자로 본인필체로 작성, ①은 인감 또는 법인 도장 날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 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 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거창군수 귀중



(2020년 거창군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

##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거창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 귀 거창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거창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년 월 일

차량소유자 : (주민등록번호 : - \*\*\*\*\*)  
장치제작사 : (서명, 인)